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20

발의연월일: 2024. 12. 31.

발 의 자 : 윤영석 · 조경태 · 곽규택

최형두 · 정동만 · 박덕흠

구자근 · 서범수 · 김상욱

최보윤 · 김도읍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지에서 토석채취를 완료한 후 재해방지 및 녹화 위주의 복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해당 적지별 복구와 관련한 제반여건(지하 채석, 비탈면의 소단 조성을 위한 가용면적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 적인 복구방법을 적용하고 있다보니 해당 적지의 복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채석부지가 미복구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사회적・환경적 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

또한, 토석채취 완료 후 산지로 복구한 경우 대부분 현장이 관리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보니 폐기물 무단투기 피해 등 각종 범법이 우려되는 장소로 변질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어 토석채취완료지에 대한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국내외적으로 살펴보면 토석채취지를 공원, 골프장, 관광지, 재생에 너지단지, 호텔, 저수지 조성 등 적지의 여건을 고려 주변환경과 조화

를 이루는 다양한 컨텐츠로 개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비추어 토석채취지에 대한 획일화된 복구보다는 다양한 친사회적·친환경적 용도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토석채취지를 친사회적·친환경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지 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산지관리위원회의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한 심의를 통하여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토석채취지 활용의 정당성·공공 성을 확보하고, 토석채취지를 친사회적·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여 그 전용목적에 맞게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복구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토석채취지의 다양한 친환경적 활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및 제39조제3항제1호 단서 신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그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해당 산지에 대하여 제8조제2항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보전산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른 채석신고를 한 자가 해당 토석을 채취 후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전에 있는 산지

제39조제3항제1호 중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새로 제37조제 1항제1호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 8조제4항제2호의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한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 ③ (생 략)

④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보전산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그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해당 산지에 대하여제8조제2항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중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그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해당산지에 대하여 제8조제2항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도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도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도는 기방산지관리위원회의 나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보전산지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로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
 다)
- <u>2</u>.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

⑤ (생략)

-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① ㅈ •② (생 략)
 -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이하 "복구대상산지"라 한 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복구대상산지에 대 하여 새로 제37조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에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한다)에 대하 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1. 복구대상산지에 대하여 제42

취허가를 받았거나 제30조제]
항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지
조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시
전에 있는 산지

<u>전에 있는 산지</u>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1

조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전에 새로 제37조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 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가 복구비를 예치(제38조제1항 단서에 따 라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 는 경우를 <u>포함한다)한 경우</u> <단서 신설>

------포함한다)한 경우. 다만,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새로 제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고자 하

는 경우에는 제18조제4항제2

호의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한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 2. (생략)
- ④·⑤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④·⑤ (현행과 같음)